
2016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6. 3



서울특별시
세 무 과

목 차

I. '14년 과세체계 개편 요약	1
II. '16년 주요 개정 사항	2
III.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 사항	5
IV.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도	8
V. 지방소득세 개요	13
VI. 법인지방소득세	15
1. 통칙 ▶ 15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19	
3.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32	
4. 내국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37	
5.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39	
6.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45	
VII. 개인지방소득세	48
※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조항 ▶ 57	
VIII.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해석사례	65
IX. 지방소득세 운영 지침	71
X. 과세체계 개편 전·후 비교	80
XI.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지방소득세)	81

※ 본 서의 내용 중 약어로 표시된 관계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명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시
지 방 세 기 본 법	지기법	지기령	지기칙	지방세기본법 제1조 ▶ 지기법 §1
지 방 세 법	지 법	지 령	지 칙	지방세법 제1조제1항 ▶ 지법 §1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지특령	지특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지특법 §1
국 세 기 본 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국세기본법 제1조 ▶ 국기법 §1
법 인 세 법	법 법	법 령	법 칙	법인세법 제1조제1항 ▶ 법법 §1①
소 득 세 법	소 법	소 령	소 칙	소득세법 제1조제1항 ▶ 소법 §1①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조특법 §1

I '14년 과세체계 개편 요약

- ☐ 종전 신고·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¹⁾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공제·감면한 후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국세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²⁾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¹⁾ 2014.1.1.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소득 발생분

²⁾ 지방소득세율 : 국세 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체계

- ☐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일부 세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개인지방소득세(舊 소득세분)은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단,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확인하여 세액 산출
- ☐ 개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지특법 893~8176조의2)]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2015.1.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법 §103조의29]

II '16년 주요 개정 사항

□ '16년 3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시행 [지령 §100조의19]

- 제출 의무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제출 시기 : '15년 특별징수분에 대해 '16년 3월 31일까지 제출
- 제출 자료 : 내·외국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 서식 : [지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납세지 정보 포함)
※ (참고) 「소칙 별지 제23호 서식」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 방법 (※ 상세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제출 유형	제출 방법	제출 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로 전자제출(전국)	위택스(www.wetax.go.kr)
	엑셀 작성 제출(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방문 제출	전산매체(CD, USB, DVD)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
	서면	

※ 제출 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엑셀 작성 양식 제공 ➡ 위택스·이택스·자치구(지방소득세팀)

□ 특별징수세액 본점 일괄 환급 도입 ➡ 기납부세액 차감 개선 [지법 §103조의62]

- [법인 총세액 기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율로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 차감
- [법인 총세액 기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본점 : 「총부담세액 + 환급세액」 차감 ➡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본점 외 : 「총부담세액」 만큼 차감 (납부할 세액 0원)

[안분신고서 작성 요령]

①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50만원	30만원	60%	20만원	40%
납부할세액	50만원	30만원		20만원	

②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1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150만원	110만원	60 + 50	40만원	= 총부담세액
납부할세액	△50만원	△50만원		0	

☐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지법 §103조의23 ⑥]**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간주
 -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16년 신설)
- 단,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 지자체에 제출한 경우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 ※ 신고서 2종(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은 사업장 소재 지자체로 각각 제출해야 함

☐ **특·광역시외의 경우 본점 소재지 자치구에 일괄 신고·납부 [지령 §88 ④]**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자치구에 일괄 신고·납부
 - 연결법인의 경우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특·광역시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주된 사업장(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 자치구

☐ **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 개선 [지법 §103조의30]**

-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
 - 무기장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가산세액 적용
- '15.7.24.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도입 [지법 §103조의31]**

-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 **청산소득 중간신고 의무 규정 신설 [지법 §103조의43]**

-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15.7.24.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하향 조정 (5% ➡ 3%) [지기법 §53조의5]**

- 미납(과소납)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 미납(과소납) 세액 × 3% + 지연일자 × 1만분의3
- '1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요건 완화 [지기법 §54]**

-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 '16.1.1. 이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환급가산금 기산일 개선 [지기법 §77]**

- 특별징수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
-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지방세 납부일보다 경정청구일이 빠른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

[참고]

-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기준세액 변경 (산출세액➡납부할세액) [지기법 §53조의2, §53조의3]
 - '1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사업연도 종료일 '16.1.1. 이후분부터 적용)
- ☐ 업무 무관비용 등 추가납부 규정 신설 [지법 §103조의63]
 -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이자상당가산액 포함)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 법법 §29⑤ 및 §33④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 조특법 §9④ 등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 법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 무관비용 및 지급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에 가산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 '16년 1월 1일 이후 자산 매각 등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III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 사항

①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지법 부칙 §2)
-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3.6.1. ~ 2014.5.31.인 경우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 '13.12.31. 이전 사업연도분의 결정·결정 및 수정신고는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② 과세표준과 세율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③ 세액 공제·감면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

* 단,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 조특법 §72①의 법인세 세율(9%,12%)의 1/10 (지특법 §167)

④ 수정신고 등 신고기한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	지자체 결정·경정전까지 신고
	수정신고	사유 발생시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시)
	신고기한 연장시	동시 연장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동시 연장)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3개월내)	

* 확정신고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5 신고 특례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구 지방세법 §91⑤)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해당 조항 삭제)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 사업연도 소득 확정신고시 가감 가능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시 신고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해야 함

6 제출 서류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 및 명세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③ 재무상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⑥ 세액조정계산서 ⑦ 안분명세서 ('16년 신설) ⑧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①~⑦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단, ③~⑦은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

7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확인 후 계산

8 전자신고·납부

☐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을 통하여 신고·납부

☐ 신고·납부 방법

구분	신고·납부 방법
단건 납부	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납부
일괄납부 엑셀 이용 (특별징수)	납세지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
일괄납부 회계프로그램 이용	회계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신고하기 > 특별징수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선택

-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업로드로 신고 가능한 법인구분(법인코드)
- 일반법인(01), 연결법인(0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03),
 -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04), 외국법인 증여소득(05), 외국법인 인적용역(06),
 -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14)
- ※ 청산소득(준청산소득) 법인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서면신고

《 E-Tax 》

조회납부 | 신고납부 | 납부(영수증)확인 | 환급금 | 나의 ETAX | 지방세 정보 | ETAX 이용안내
+ 전체메뉴

전자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상세안내)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후 신고가능

일반법인 (적용업력) 신고
사업연도가 2014년부터인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적용업력) 신고
사업연도가 2014년부터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파일첨부 업로드 신고
회계프로그램 (ERP)에서 제작한 신고서 파일 첨부 업로드신고 (일반법인, 비영리법인, 연결법인) 가능

2013년도 이전 법인소득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사용자 설명서

바로 납부

· 납세번호 - 납부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전자납부번호 - 납부

· 상하수도요금
정기분납부 ☐ 수시분 ☐

고액번호

조회 납부 **회원납부** **조회** **비회원납부** **조회**

납부 바꾸니

영수증 보관함

지방세 미리계산

지방세 이의신청

1:1 원격 상담

확대보기 안내

상하수도요금
취득세 신고
종업원분 신고
환급금 조회
미일리지조회
나의ETAX
특별징수분신고
자동차세연납
등록면허세
재산세조회납부

※ E-Tax의 경우 서울시 운영 신고납부 사이트로 서울시분 지방소득세만 신고납부 가능하나, 본점이 서울에 소재할 경우 전국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로 건의중

《 We-Tax 》

wetax 위택스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확인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나의위택스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기타 인증/새인증)

전자신고·납부시간 07:00~23:30

신고하기

- + 취득세(부동산)
- + 등록면허세
-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종합소득분
 - 양도소득분
- + 법인소득분
 - + 주민세
 - + 지역자원시설세
 - + 레저세
 - + 담배반출
 - + 수질신고
 - + 경정청구

법인소득분

일반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일반법인신고"를 선택하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외 법인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 사업연도가 2013년 이전인 법인의 경우 상단의 기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연도가 2013.06.01~2014.05.31)

※ 신고 납부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포털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대행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법인 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파일첨부 신고 (개정 이전)

파일첨부 신고 (개정 이후)

사업연도가 2014년부터인 일반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 (예 : 사업연도 2014.01.01~2014.12.31)

※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경우 단일사업장만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방문신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는 수정·결정 불가)

사업연도가 2014년부터이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 (예 : 사업연도 2014.01.01~2014.12.31)

※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경우 단일사업장만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방문신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는 수정·결정 불가)

2016년 1월 1일 시행규칙 서식 개정된 파일 신고 레이아웃 기준에 의해 작성된 파일을 신고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3월말 까지 운영 후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위택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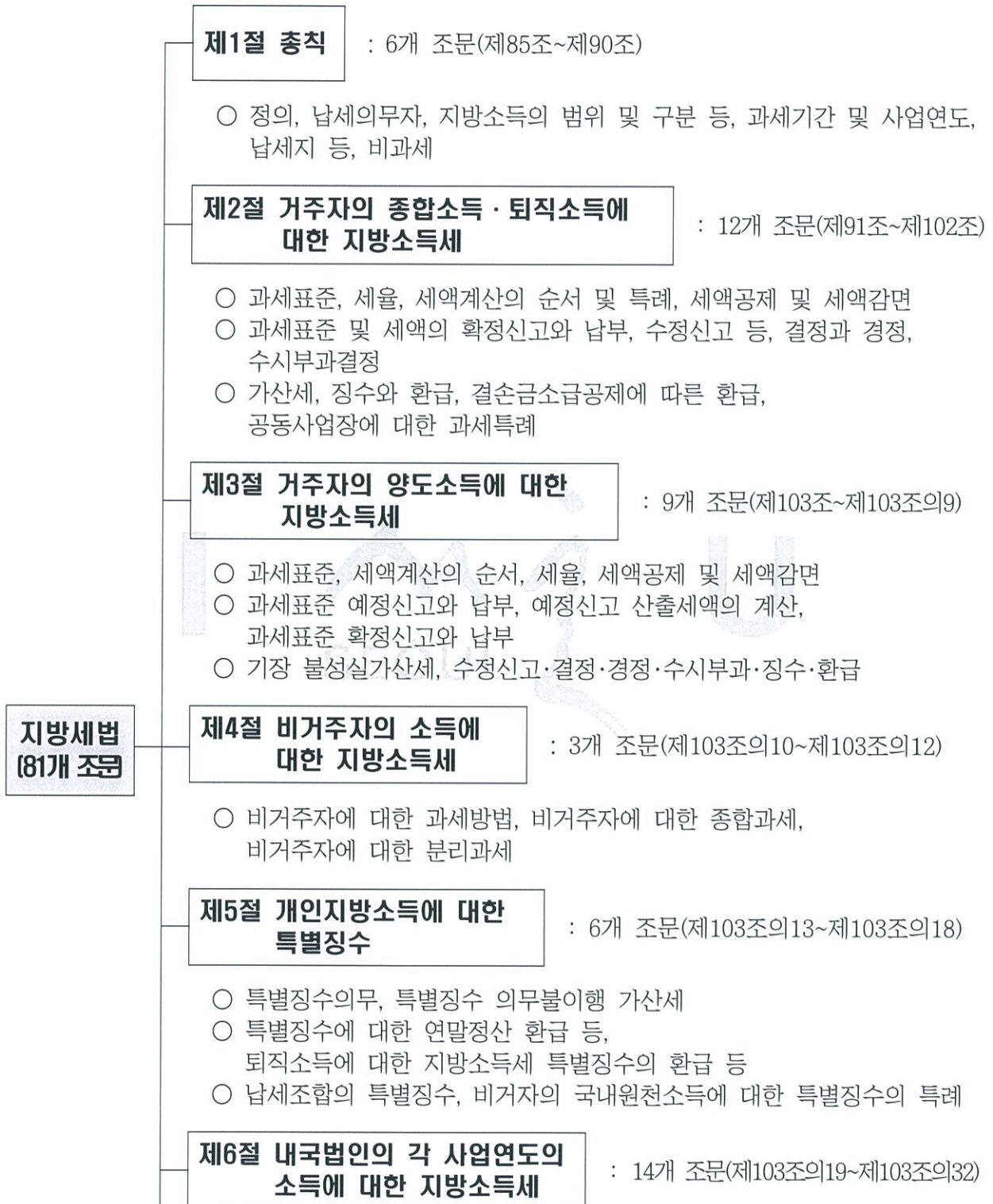
※ 대형파일 신고 시 문제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파일첨부 신고 가능한 법인수를 100개로 제한하오니 양지바랍니다. (사업연도가 2014년부터인 일반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QUICK MENU

-
-
-
-
-
-

7

IV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도



-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정신고 등, 결정과 경정
- 수시부과결정, 징수와 환급,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8개 조문(제103조의30~제103조의40)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과세표준, 연결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수정신고·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가산세,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6개 조문(제103조의41~제103조의46)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과 경정, 징수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6개 조문(제103조의47~제103조의52)

- 과세표준, 세율
-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특례
-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 6개 조문(제103조의53~제103조의58)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의 배분 등,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준용규정

제11절 보칙

: 5개 조문(제103조의59~제103조의63)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소액징수면제, 가산세적용의 특례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
(93개 조문)**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 9개 조문(제93조~제98조)

-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 3개 조문(제99조~제101조)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 6개 조문(제102조~제106조의2)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 2개 조문(제107조~제108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 6개 조문(제109조~제114조)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 4개 조문(제115조~제118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 5개 조문(제119조~제123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 9개 조문(제124조~제131조의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 5개 조문(제132조~제136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 14개 조문(제137조~제148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 20개 조문(제149조~제167조의2)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아시
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금융중심지 창업기업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 10개 조문(제168조~제176조의2)

- 중복지원의 배제례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감면세액의 추징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V 지방소득세 개요

1 정 의 (지법885)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
법인지방소득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

☐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소법 §1조의2①1]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법인 구분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 사업자와 사업장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장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연결집단	연결법인 전체
연결모법인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2 개요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이 지역세수와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0년 舊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하고

- 2014년에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표준에 각각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 개인은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차감하되, 법인은 별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지 않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구분	개인	법인	비고
~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 2013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목 조정
2014년 ~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세목 조정, 과세체계 개편
2015년 ~		내국법인 특별징수 시행	이자·배당 소득

☐ 개편된 과세체계에 의한 지방소득세는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개편된 과세체계로 산출한 세액을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함께 신고하도록 유예규정을 두어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Ⅵ 법인지방소득세

1 통 칙

① 납세의무자 [지법 §86]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
외국	영리법인	국내	소득	과세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		×	×

외국의 정부, 지자체 :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취급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

②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법 §34]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 ☐ 특별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③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지법 §87]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지방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름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양도소득
4. 법제856에 따른 미환류소득

구 분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국내 소재 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법인세액	해산으로 인한 소멸시
세 율	1~2.2% 누진세율	1% (미등기 4%)	10%	1~2.2% 누진세율
신고·납부 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4 사업연도 [지법 §88]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 <1순위> 법령·정관상 1회계기간(1년 초과 못함)
- <2순위> 설립신고(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한 기간
- <3순위> 1,2가 없는 경우 1.1~12.31

☐ 사업연도 변경

- 종전사업연도 개시일 ~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

☐ 의제 사업연도

구분		의제 사업연도	
해산	합병·분할· 분할합병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합병(분할) 등기일	
	위 외 해산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해산(파산) 등기일	
청산	청산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사업 계속시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사업계속 등기일	
연결납세방식 적용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연결납세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상법 등 조직변경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기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의제규정 적용 안함 ☞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미발생으로 신고시 : ~ 신고일까지 1사업연도로 봄	
	설립무효 설립취소 판결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확정 판결일	

5 납세지 [지법 §89]

-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법인의登記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소재지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 ☐ [안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연결 법인은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

《 안분율 》

$$\text{산출세액} \times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소수점 6자리까지 산정 권장

《 안분 방법 》

산출세액		
×	안분율	
	사업장별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체사업장 공통 공제·감면일 경우 안분하여 차감. ○ 특정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공제·감면일 경우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 단, '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결정세액	
+	가산세	○ 지법 §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무기장 등)는 안분하여 가산
+	추가납부세액	○ 이월과세 (지특법 §119, 120, 126, 128)
	충부담세액	○ (납부할세액 있는 경우) 안분율만큼 차감
-	기납부세액	○ (환급받을세액 있는 경우) 본점 ☞ 일괄 환급, (충부담세액+환급세액) 차감 본점 외 ☞ 납부할 세액 0원, (충부담세액)만큼 차감
	납부할세액	
±	경정·수정신고 가감액	○ 舊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및 동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개정 후 지방세법에서는 10% 미만 가감 신고 특례가 폐지되어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사업장별 납부 세액	

〔 참고 〕

- 종업원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단,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 사업장이란 :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인적설비 :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물적설비 :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

※ 안분 관련 주요 사례 p65 참고

⑥ **비과세** [지법 §90]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법법§51)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 차익, 배당소득 (조특법 §13)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19] **법인세 규정 준용**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의 유형별 과세표준》

법인유형	과세표준	
일반법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해운기업 (합산)	해운소득	개별선박순톤수×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의 합계
	비해운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 가산 세무조정	

2 세율 [지법 §103조의20]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법상 계산법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법	
	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과세표준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과세표준 ×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과세표준 × 2.2%	4,200만원

《조합법인 등 적용 세율》

과세표준	연도별 적용 세율	
	'14년 이전	'15.1.1.이후 개시사업연도
20억원 이하	0.9%	0.9%
20억원 초과		1.2%

③ 세액 계산 [지법 §103조의21]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 법인지방소득세

$$\text{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begin{array}{l} \text{① 각 사업연도 소득,} \\ \text{② 토지 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계액} \\ \text{③ 미환류소득} \end{array}$$

$$\text{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 방소득세} = \text{산출세액} - \text{세액공제·감면}^{1)} + \text{가산세}^{2)} - \text{기납부세액}^{3)}$$

¹⁾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²⁾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³⁾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text{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left(\text{과세표준} \times \frac{12}{\text{사업연도 월수}} \times \text{세율} \right) \times \frac{\text{사업연도 월수}}{1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④ 세액공제 · 감면 [지법 §103조의2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며, 현재 아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

지특법 §16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0.9~1.2% 세율 적용
※ 세율 - '15년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0.9%, 20억 초과시 1.2%

⑤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조의23]

☐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납부서식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43호 43호의7
첨부1	③ 재무상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⑥ 세액조정계산서 ⑦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16년 신설, 舊 안분내역서로 제출)	43호의2 44호의6
첨부2	⑧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⑧-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⑧-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43호의3 43호의4 43호의5 43호의6 43호의9
납부서	⑨ 납부서 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검 영수증 (※ 수기 납부서 지양)	14호 43호의8

【 Check 】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인정)
-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①, ②)
- ▶ 첨부서류 미제출시 ➡ 무신고 간주 (③~⑦)
- ※ 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⑥ 수정신고 [지법 §103조의24]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 '16.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신고와 동시 납부하지 않아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 ➡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 (지법 §50, §54)
- 단, 세무공무원(국세공무원 포함) 조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감면 제외 (지령 §34)

【 Check 】

- ▶ 세무서로부터 경정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 舊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1① 단서 10% 미달 가감신고 특례 폐지
- '14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세액 크기에 관계없이 발생시마다 신고납부

- ▶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
 - 부과지령을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 가능,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없음.
 -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지령할 경우 가산세 적용
- ▶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세액은 다음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신고·납부 가능 (단, 환급가산금 미적용)

7 결손금 소급 공제 [지법 §103조의28]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신청 가능

☐ 조건

- 중소기업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 ①직전 사업연도 및 ②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
- 신고기한내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Check 】

- ▶ '16.1.1. 이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분부터 세무서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 ▶ 다만, 정확한 환급세액 확인, 조기환급 등을 위해 지자체 별도 제출 권장

☐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text{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 (\text{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text{소급공제 결손금액}) \times \text{직전 사업연도 세율}$$

【 Check 】

- ▶ '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및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은 부가세 방식으로 계산
-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별지 제43호의9 서식] 작성방법 참고

8 특별징수 [지법 §103조의29] [지방세법 규정 외 법인세법 준용]

☐ 특별징수란?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금을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적용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제42호 서식]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납부일
2016년 상반기(1월~6월) 지급액	2016.1월	2016.6월	2016.7.10.
2016년 하반기(7월~12월) 지급액	2016.7월	2016.12월	2017.1.10

☐ 특별징수 대상과 세율 [지법 §103조의29, 법법 §73, 소법 §127①1,2, 소법 §16,17]

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별징수 계산세율
1.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14%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이익	14%	1.4%

☐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법 §53조의5]

(~'12년) 과소·무납부세액 × 10% (舊 지법 §96)

('13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무납부세액 × 5%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16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무납부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납세지 [지법 §89]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		납 세 지
법인		·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 회계처리시 그 사업장 소재지 - 단,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계좌 개설지)
개인	거주자	· 주된사업장 소재지 - 주된사업장 외 소재지에서 특별징수시 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업장 외 국내사업장에서 특별징수시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류지 또는 체류지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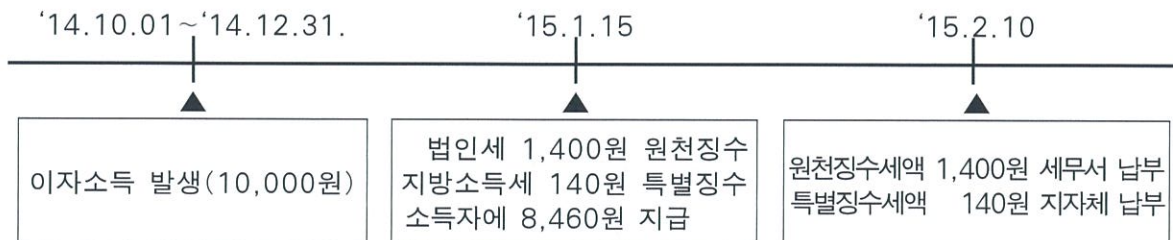
- 독립채산제 :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 지급지 판단 :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에 대한 판단은 이자소득의 발생 및 지급과정 등 제반 업무를 고려할 때, 예치대상자 선정, 예치한 금액의 관리, 이자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이자소득 지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사실상 소득의 지급지로 판단함 [지방세운영과-614, 2010.2.9.]

□ 시행시기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함 [지법 부칙 제12153호 §1]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25)%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25)% 원천징수 + 법인지방소득세 1.4(2.5)% 특별징수
- *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지기법 §34)

《 사 례 》

〈예〉 '14년 10.1. ~ 12.31. 발생한 이자소득 10,000 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 특별징수영수증 발급 및 특별징수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제42호의4 서식]
 - 단, 법인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봄
 - 계좌별로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년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발급 생략 가능하나,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42호의4 서식]를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
 - 제출서식 : 지척 별지 42호의4(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6년 3월 31일까지(최초 시행)
 - 제출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 제출특례 - 지정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제출방법

위택스에서 제공한 파일제출 매뉴얼에 따라 작성 ➡ 위택스 전자제출 (단, 20MB이하)
 ➡ 지자체 방문제출 (CD, DVD, USB)
 ※ 더존·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기능 제공

위택스·이택스·지자체에서 제공한 엑셀양식에 작성 ➡ 지자체 담당 행정메일로 제출
 ➡ 이택스(서울시) 업로드 제출

서면 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 지자체 제출
 - 유의사항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시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
 -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위택스(wetax.go.kr) - 행정자치부 운영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운영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로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처리방법

-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 [별지43호의5 서식(갑),(을)]
 - ※ (참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안분신고서 작성 요령]

□ 특별징수세액 본점 일괄 환급 도입 ➡ 기납부세액 차감 개선 [지법 §103조의62]

① [법인 총세액 기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율로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 차감

➤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50만원	30만원	60%	20만원	40%
납부할세액	50만원	30만원		20만원	

② [법인 총세액 기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본점 : 「총부담세액 + 환급세액」 차감 ➡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본점 외 : 「총부담세액」 만큼 차감 (납부할 세액 0원)

➤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1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150만원	110만원	60 + 50	40만원	= 총부담세액
납부할세액	△50만원	△50만원		0	

9 전자 신고 · 납부

□ 전자신고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 신고 방법

○ 파일신고방식 :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세무회계 S/W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사용자의 PC에 다운로드하여 위택스 또는 이택스로 접속하여 전송하는 방식

- 위택스(wetax.go.kr) : 전국법인 신고가능, 대행인의 경우 신고전 대행인 승인절차 필요

-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사업장에 한해 신고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서울에 본점이 소재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국 사업장에 대해 신고 가능하도록 행자부 건의 중

○ 신고서 작성 방식 :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직접 신고서를 입력하여 신고(전송)하는 방식

【 Check 】

▶ 신고서 작성 후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납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

10 가산세

□ 기본법 가산세 [지기법 §53조의2 ~ 54조]

구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MAX)	비고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 20/100	납부세액 × 20/100 수입금액 × 7/10,000	
	부정	산출세액 × 40/100	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 14/10,000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 10/100	납부세액 × 10/100	
	부정	산출세액 × 40/100	① 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 14/10,000 ②(일반과소-부정과소)×10/100	① + ②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부정		부정과소신고와 동일	① + ②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납부(환급)불성실	납부	미납세액 × 3/10,000		일수계산
	환급		초과환급세액 × 3/10,000	
가산세감면	기한후신고	1개월 내 50%	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6개월내 감면 없음
	수정신고	6개월 내 50%, 1년 내 20%, 2년 내 10%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분과 부정과소신고분이 모두 있는 경우로서 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text{부정과소신고분세액} = \text{과소신고분세액} \times \frac{\text{부정과소신고분과세표준}}{\text{과소신고분과세표준}}$$

$$\text{일반과소신고분세액} = \text{과소신고분세액} - \text{부정과소신고분세액}$$

【 Check 】

- ▶ 지방세는 무신고·과소신고 등 수입금액 기준 계산 규정 없음
- ▶ 지방세는 의무위반별 가산세 한도 규정 없음. 단, 현재는 국세 가산세의 10%로 개정되어 가산세 한도 적용된 금액임.
- ▶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 - (국세) 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지방세) 1개월 내 50%, 6개월 내 규정 없음
- ▶ '1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산출세액 ⇄ 납부세액」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

□ 지방세법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100
- 무기장 가산세(법법 §76①)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지기법 §53조의2, 53조의3)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비고
① 무기장	▶ MAX(산출세액×20%, 수입금액×0.07%)	비영리내국법인 제외
③ 주주등 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 0.5%	
⑤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 미수취·허위수취 금액 × 2%	
⑥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 2%	1개월 내 제출 1%
⑦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 × 2%	1개월 내 제출 1%
⑨ 계산서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 × 1%	1개월 내 제출 0.5%
	▶ 미발급·가공발급·허위수수분 공급가액 × 2%	
⑩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사실과 다른 영수증 발급금액 × 2% ▶ 기부자별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 0.2%	
⑪, ⑫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 건별 MAX(거부·불분명 금액×5%, 5천원)	
⑬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 0.5%	

□ 조특법 가산세 [지법§103조의54]

종류	요건	내용	지방소득세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조특법§90의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출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1천원	별도규정없음
② 동업기업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의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 소득금액의 4% · 과소신고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2%	국세 가산세의 10%
③ 동업기업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조특법§100의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Max(한도 : 미납세액의 10%) ① 미납금액×0.03%×미납일수 ② 미납세액의 5%	국세 가산세의 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적용 특례 [지법 §103조의6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도 미부과

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31] **법인세 규정 준용**

- 내국법인이 법법 §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 및 주택을 통한 재산증식 억제 목적, 개인 부동산 양도차익과의 형평성 고려
-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은 익금항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다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제도

□ 과세대상 및 세율 (국세의 10% 수준 지방소득세율 적용)

- 주택 : 1%(미등기시 4%) [법령§92조의2②]

《과세 제외 주택》

- ▶ 임원 및 사용인에게 장기 제공하는 사택 (10년 이상)
-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 미경과 주택
- ▶ 일정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5년이상 임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
- ▶ 기타 부득이하게 보유한 주택 (법칙§45조의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매입주택)

- 비사업용 토지 : 1%(미등기시 4%) [법법§55조의2②,③]

- 보유기간 기준과 용도기준을 보아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

【 Check 】

- ▶ 법법 §25①1호 중소기업의 경우 '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적용 제외 [지법 법률 제12505호 부칙 §5]
- ▶ '09.3.16.~12.12.31.까지 취득한 자산 양도시 적용 제외

☐ 비과세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은 과세) [법법§55조의2④]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법인 직접 경작 농지로서 일정한 경우의 교환·분할·통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일정한 사유

☐ 세액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 × 1%(미등기 4%)

*토지 등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 단,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차감

☐ 둘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령 §92조의2⑨에 따라 산출

《법령§92조의2⑨》

- ▶ 둘 이상의 토지 등 양도시 각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소득 합산
- ▶ 자산 중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아래 양도소득에서 순차 차감
 - ① 양도차손 발생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 ② 양도차손 발생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 (준용)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취득시기 등 법령 §92조의2⑥에 따름

《법령§92조의2⑥》

- ▶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 양도시에도 동일

☐ 안분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면적으로 안분 (p17, 65 참고)

1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103조의31] **법인세 규정 준용**

- ☐ 내국법인(연결법인 포함)이 「법인세법」 제53조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추가하여 납부
- '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 법인세는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기업소득 환류세제 요약** (법법 §56, 법령 §93)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선택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 투자포함방식 : $[\text{소득} \times 60 \sim 80\% - (\text{투자} + \text{임금증가} + \text{배당액 등})] \times 10\%$
 - 투자제외방식 : $[\text{소득} \times 20 \sim 40\% - (\text{임금증가} + \text{배당액 등})] \times 10\%$

[참 고]

□ **가계소득 증대세제** ('14년 기획재정부 도입)

○ **근로소득 증대세제**

-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 기업혜택 - 임금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 **배당소득 증대세제**

-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적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 *고배당 주식으로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9%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 선택
-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120%이상 &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50%이상 &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 **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과세→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로 유도
-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약 4,000개 기업)

1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32] **법인세 규정 준용**

□ **수익사업**

-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없음
- ※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 또는 국가 귀속

□ **이자소득**

- 「지방세법」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로 종결*
-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 ※ 특별징수로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 등을 통해 이를 다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구분	제출 서류 (☞법령 보완 대상)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43호의6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43호의7
첨부1	③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16년 신설, 舊 안분내역서로 제출)	44호의6
첨부2	④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3호의5
	⑤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43호의6부표

□ 자산양도소득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43호의10 서식])
 - ※ 비영리법인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봄
 - ※ 예정신고납부 후 확정신고 가능,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 단,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이상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3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지법 §103조의33] **법인세 규정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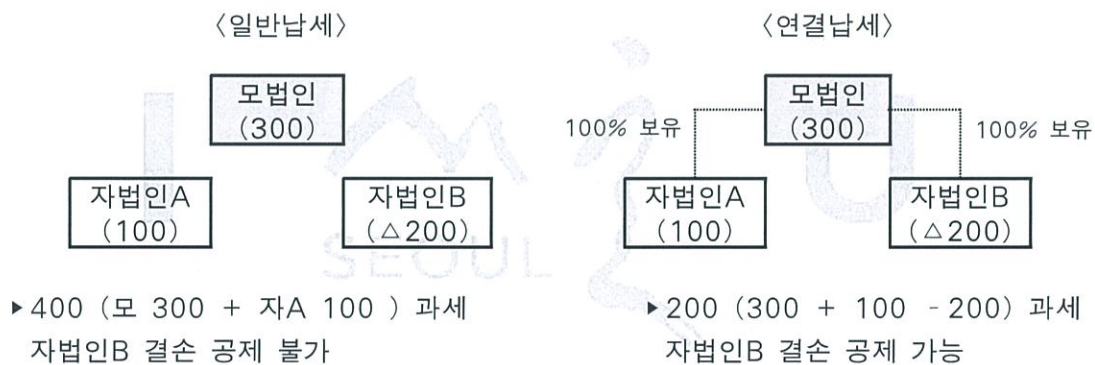
-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 준용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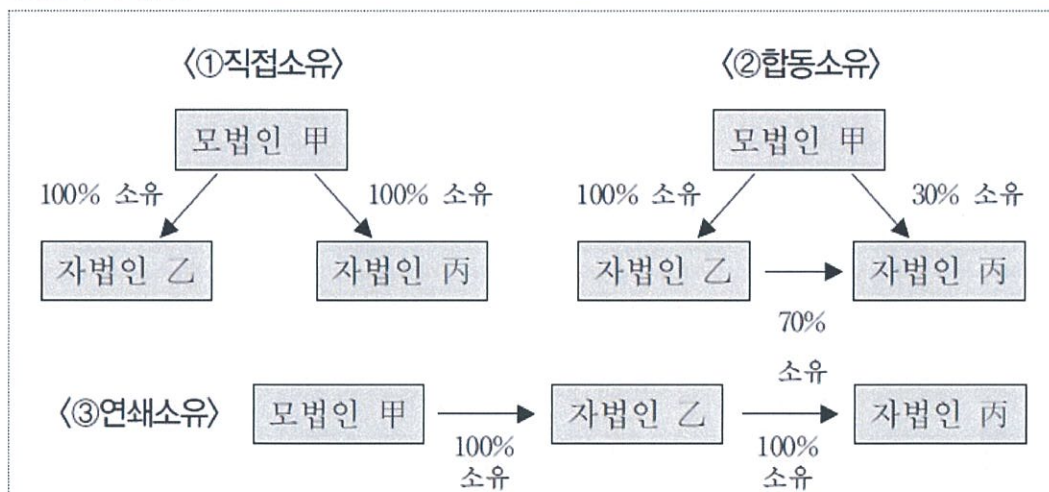
□ 연결납세 ('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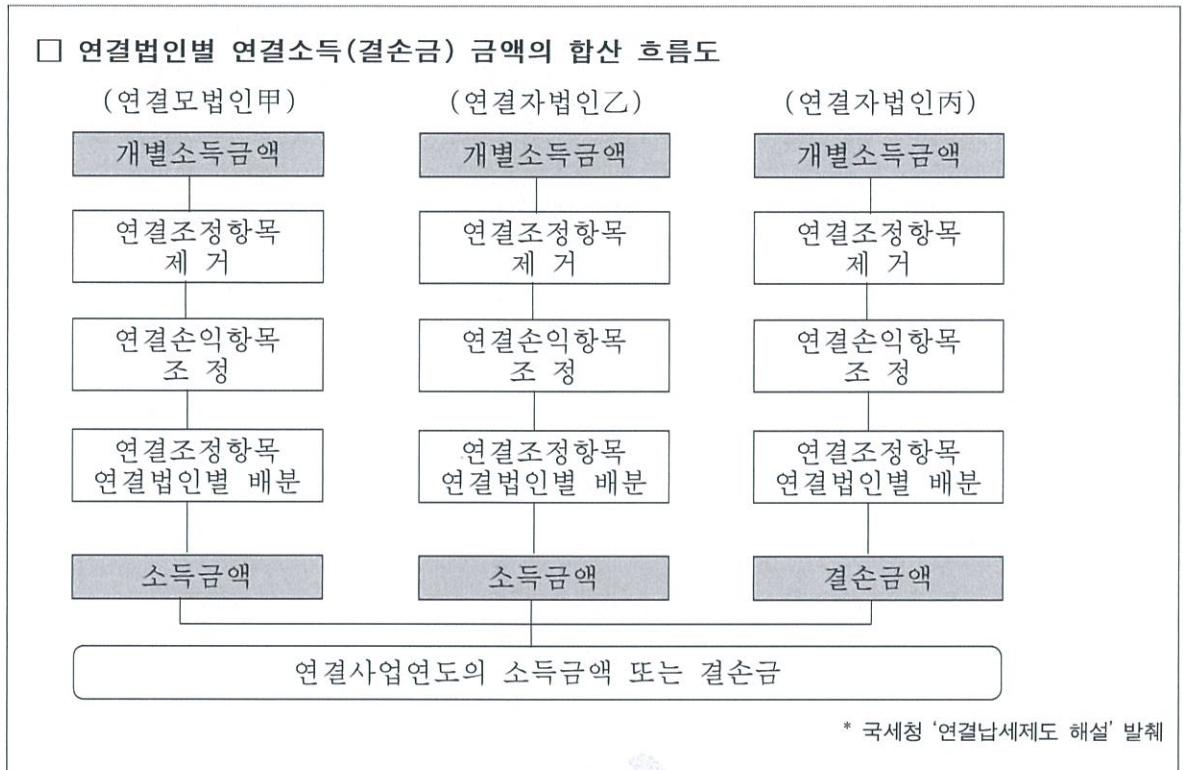
- 연결납세방식이란 경제적으로 결합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각 기업의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조세체계 선진화
-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이연을 통해 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옴

□ 결손금 통산 비교



□ 완전지배 유형





② 신고·납부 의무

- 연결모법인 (자법인은 신고의무 없음)

③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단, 특별시·광역시에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④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34]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⑤ 연결산출세액 [지법 §103조의35]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연결산출세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1년으로 환산 (지법 §103조의21② 준용)

6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text{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개별귀속액}^{1)} \times \text{연결세율}^{2)}$$

¹⁾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²⁾연결세율 = 연결산출세액 / 과세표준

《사 례》

1. 과세 자료

〈법인세 과세자료〉					〈안분율〉*			
구 분	합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구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각 사업연도 소득	-	80억	35억	△21억	서울	50%	30%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100억	90억	30억	△20억	부산	30%	-	-
연결방식 도입후 결손금	5억	-	5억	-	대구	20%	70%	100%
법인세 소득공제	15억	15억	-	-	합계	100%	100%	100%
법인세 세액공제	2.8억	1.85억	0.95억	-	*안분율 ; p.17 안분율 및 안분방법 참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억	2억	1억	-				

2.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계산 순서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합계 및 계산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90억	30억	△20억	100억 = 90+30-20
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75억	25억	-	100억 × 9/12, 100억 × 3/12
③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60억	20억	-	80억 = (75-15)+(25-5)
④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80억			80억 = 60억 + 20억
⑤	연결 산출세액	1.58억			1.58억 = 80억 × 2% -200만
⑥	연결세율	1.975%			1.975 = 1.58억 / 80억
⑦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11,850만	3,950만	-	11,850만 = 60억 × 1.975% 3,950만 = 20억 × 1.975%
⑧	서울시 산출세액	5,925만	1,185만		5,925만 = 11,850 × 50% 1,185만 = 3,950 × 30%
⑨	서울시 신고세액	7,110만			7,110만 = 5,925 + 1,185

3. 안분신고서 작성

⑮ 지방소득세 총액

71,100,000

⑯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	법인 등록번호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사업장별 산출세액	...	탄소배출 조정세액	납부할 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S	모	000	118,500,000	118,500,000	59,250,000	...		59,250,000	서울 종로구
A	자	111	39,500,000	39,500,000	11,850,000	...		11,850,000	대구 달서구
B	자	222	-	-	-	...		-	대구 수성구
						...			
						...			
합 계					71,100,000	...		71,100,000	

7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37]

○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8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44호 43호의7(을)
첨부1	각 연결법인의 ③ 재무상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⑥ 연결집단 세액조정계산서* ⑦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16년 신설, 舊 안분내역서로 제출)	44호의2 44호의6
첨부2	⑧ 지법 §103조의23② 각 호의 서류 ⑧-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⑧-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44호의3 44호의4 44호의5
납부서	⑨ 납부서 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검 영수증 (※수기 납부서 납부 지양)	14호 43호의8

【 Check 】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연장 인정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인정)
-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①, ②)
- ▶ 첨부서류 미제출시 ⇨ 무신고 간주 (③~⑦)
※ 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9 법 가산세 [지법 §103조의39]

○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지법 §103조의30) 준용



4 내국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41]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세율 [지법 §103조의42]

- 「지방세법」 제103조의 20 지방소득세율 적용 (1 ~ 2.2%)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text{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과세표준(청산소득)의 계산 : 잔여재산의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상 자기자본의 총액

4 안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p.17 안분방법 참고)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

5 확정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43]

- 법법 §84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 해당 신고기한까지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 해산한 경우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6 중간신고 의무 신설 [지법 §103조의43]

- 법법 §85에 따른 중간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유 형	신고납부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전 일부를 주주 등에 분배	분배일로부터 1월 이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

※ 「국유재산법」 제80조(국가가 지분증권의 1/2이상 보유회사)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은 중간신고 의무 없음

7 제출서류 및 납부 서식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 서식]
- 납부서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제43호의8 서식]

【 Chec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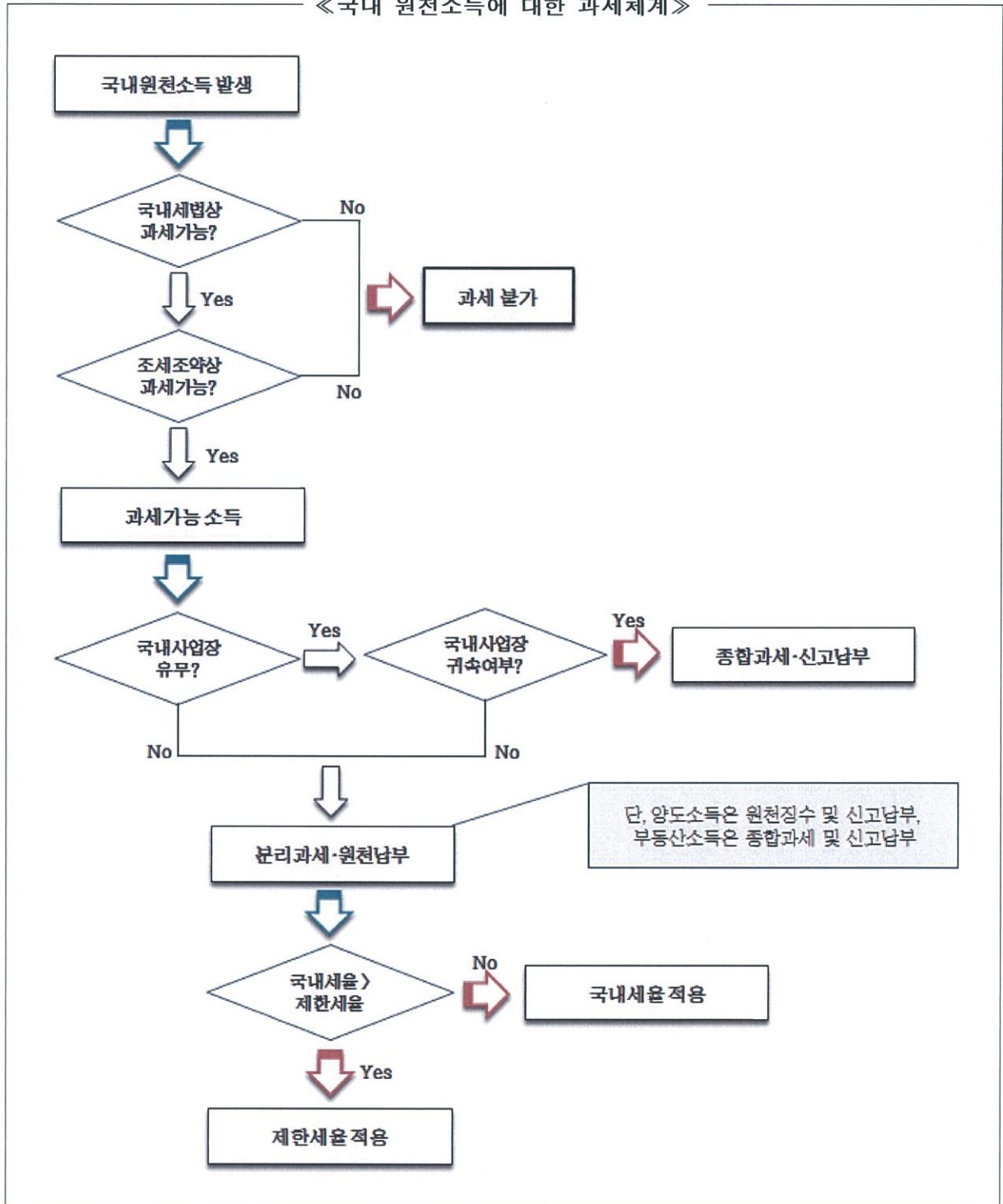
-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함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세와 동일함
- ▶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중가산금 미징수
- ▶ 법법§78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미과세 (지법§103조의46)

5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과세방법 법인세 규정 준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2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47] **법인세 규정 준용**

-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법 §93조제3호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법 §91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과세표준} = \text{국내원천소득의 총합금액} - \text{이월결손금} - \text{비과세소득} - \text{상호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

*법법 §93조제3호에 따른 소득 :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 동법 7호 소득(양도소득)은 제외

-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 [법법 §91②]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과세표준} = \text{법법 §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중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 [법법 §91③]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과세표준} = \text{법법 §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법법 §98조①, §98조의3, §98조의5, §98조의6

[요약]

- ▶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 종합과세대상 외 외국법인
 - 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금액
-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령§128]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 有		기타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율 (법법)
		법법§93	국내사업장에 귀속 ×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6호	인적용역소득				20%
9호	사용료소득				20%
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
11호	기타소득				20%
7호	양도소득		분류과세, 신고납부	분류과세, 신고납부 (예납적 원천징수)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
3호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	-

③ 세액 계산 및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지법 §103조의47⑤] **법인세 규정 준용**

-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법 §92부터 §94까지 준용

④ 세율 [지법 §103조의48]

- ☐ 법법 §93조제7호(양도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1% ~ 2.2% 세율을 적용.
- 지법 §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49]

- ☐ 내국법인 세액계산(지법 §103조의21)을 준용하여 계산

$$\text{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text{양도금액} - \text{양도당시 장부가액}$$

※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법법 §92③ 준용하여 계산 - 장부가액 대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차감

⑥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지점세) [지법 §103조의50]

- ☐ 영리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법 §96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10분의1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참 고 〕

▶ 외국법인의 지점 및 자회사 비교

국내에 지점(사업장) 형태 진출	국내에 자회사형태로 진출
외국법인의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님 · 지점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 그 소득을 본점에 송금하는 경우 과세 제외	외국법인의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 ·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 그 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에 대해 다시 과세

- ▶ (지점세)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국내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하나, 지점인 경우 배당과세가 되지 않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유보이익 중 법인세등과 재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 (조세조약에 규정한 경우에 한함)
- 과세대상 소득 × 20% (또는 조세조약상의 세율)

7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51]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법 §93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법법 §97 준용

8 신고기한 연장 [지령 §100조의27] **법인세 규정 준용**

- ☐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봄
- 기한연장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 Check 】

- ▶ 외국법인과 달리 내국법인은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음에 유의

9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신고납부의 특례 [지법§103조의51⑤] **법인세 규정 준용**

- ☐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과세기준 충족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 동일한 사업연도(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양도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①, 지령 §100조의28제1호]
신고납부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 1개월)
서식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별지 제45호의2 서식]
납세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준용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 양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 주식 등 유가증권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 조특령 §18조④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 등 유가증권
-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것)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③, 지령 §100조의28제2호]
신고납부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 1개월)
서식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별지 제45호의3 서식]
납세지	해당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의 증여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 국내에 있는 자산을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으로부터
- 증여받아 증여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④, 지령 §100조의28제3호]
신고납부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 1개월)
서식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별지 서식 제45호의 4서식]
납세지	해당자산의 소재지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 내국법인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	-----------------

10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납부 특례 [지법 §103조의51⑥]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법 §93조의6에 따른 영화·연극 배우, 직업운동가, 변호사 등 인적용역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
- 특별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 가능

관계 법령	[법법 §93조6, 지령 §100조의29]
신고납부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서식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 [별지 제45호의5 서식] (첨부)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소득-관련비용)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2%)

11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지법 §103조의52] **법인세 규정 준용**

-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법 §98부터 §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그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법법 §98조부터 §98조의6 준용

6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 규정 준용**

- ☐ 조특법 §100조의15①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 용어

구 분	내 용
동업기업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동업자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분가액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2 납세의무자 [지법 §103조의53] **법인세 규정 준용**

- ☐ 동업자
- 조특법 §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 동업기업 전환법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조특법 §100조의16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짐

③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계 법령	[지령 §100조의30]
신고납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준청산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의6 서식) (첨부)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안분기준일	준청산일 현재의 안분율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2%)

④ 동업기업의 배분 [지법 §103조의54] **법인세 규정 준용**

- ☐ 아래 금액은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단, 아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함.

배분 기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
세액공제·감면	지특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금액
특별징수세액	지법 §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및 지법 §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조특령 §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⑤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지법 §103조의55] **법인세 규정 준용**

-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조특법 §100조의21①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

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지법 §103조의56] **법인세 규정 준용**

- ☐ 조특법 §100조의24①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자체 납부

7 동업자 배분대상 가산세 [지법 §103조의57, 지령 §100조의32③] **법인세 규정 준용**

☐ 지법 §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개정대상

○ **舊 지방세법** : 무기장가산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신용카드거래 거부,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 가산세 배분

☐ 조특법 §100조의25에 의한 가산세

구 분	법인세 가산세액(㉠)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명세 신고불이행	▶무신고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4% ▶과소신고 : 과소신고 소득금액 2%	▶㉠ × 10% ▶㉠ × 10%
동업기업 특별징수불이행	▶MAX (①, ②) ①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5% ② 무(과소)납부한 세액×일수×3/10,000	▶㉠ × 10%

【 Check 】

- ▶ 동업기업에 대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징수되어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 ▶ 준정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내 전액 납부하여야 함

8 국세 준용 [지법 §103조의58]

☐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 §100조의14부터 §100조의26까지 규정을 준용함.

※ 동업기업의 신고 및 서류제출 특례까지 준용한 것은 아님에 유의

Ⅶ 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요약 】

- ▶ 과세표준 : 국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 세율 : '16년말까지 국세 세율의 10% 수준 유지
 - '17.1.1. 이후 표준세율의 50% 범위내 탄력세율 제정 가능
- ▶ 세액 공제감면 : '16년말까지 국세 공제감면의 10% 유지
 - 지특법 §167조의2
- ▶ 부담세액 : '16년말까지 국세의 10% 수준 유지 (단, 가산세 차이는 발생)
- ▶ 신고·경정결정 : '16년 말까지 세무서에 동시신고, 세무서에서 경정결정
- ▶ 납세지 : 납세지 지정제도 없음, 특별징수(원천징수) 납세지 상이

① 납세의무자 **소득세 규정 준용**

-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②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법 §34] **소득세 규정 준용**

-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 : 양도일이 발생한 달의 말일
- ☐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③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소득세 규정 준용**

- ☐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

④ 과세기간 **소득세 규정 준용**

-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과세기간 : 1/1 ~ 12/31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1 ~ 사망한 날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1 ~ 출국한 날

5 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6조부터 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구분	납 세 지
거주자	· 원칙 : 주소지 · 예외 :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	·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예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장소

※ 소법 89 「납세지 지정」 지방세법상 규정 없음 (소득세와 납세지 상이)

※ (종중)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

구 분	과세대상 자산
상속 (소법§8①)	피상속인 · 상속인 ·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소법§8②)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국외 근무 공무원, 파견 임직원 (소법§8⑤, 소령§3 · §5⑥)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

소득구분	납세지
1. 근로소득, 퇴직소득	근무지 (파견근무의 경우는 파견지)
2. 본점 일괄 처리 배당·이자소득 등	소득의 지급지
3. 복권당첨금,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판매지
4. 연금소득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 Check 】

▶ 국세와 일부 납세지 차이가 있으며, 소득세법상 납세지 지정 제도(소법§9)는 지방소득세에 적용되지 아니함

6 비과세 소득세 규정 준용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지방소득세 비과세

7 과세표준 소득세 규정 준용

□ 종합소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종합 또는 분리)하여 과세함
- ▶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 : 2012.12.31. 이전 4,000만원)

Max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표준세율 + (2천만원 × 14%* × 10%)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9%

· 비교산출세액 = Max (①, ②)

① 금융소득총수입금액 × 14%* × 10% × 표준세율

② (금융소득총수입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율 × 10% +
(종합소득과세표준 - 일반금융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표준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9%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서, 배당가산액을 가산하기 전의 금액

*** 배당가산액이 포함된 금융소득

*배당가산액이 포함된 금융소득

- ▶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Max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 일반산출세액 = (금융소득총수입금액×14%*×10%)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표준세율
- 비교산출세액 = (금융소득총수입금액×14%*×10%)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표준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9%

[참 고]

구분	내용	세율
무조건분리과세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표준세율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38%(90%)
	법원보관금(보증금, 경락대금)의 이자소득	14%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금융소득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는 금융소득 등)	14%
무조건종합과세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국내금융소득 중 소법상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14%(25%)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25%

*출자공동사업자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배당소득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지법 §93, 조특법 §104의27)

종합과세 대상	원천징수세율을 14% → 9%로 인하
분리과세 대상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 동일 직장이나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 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특별징수로 과세종결

$$(\text{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text{기본공제} - \text{납입연수공제}) \times \frac{1}{\text{납입연수}} \times \text{표준세율} \times \text{납입연수}$$

※ 납입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 기본공제 40%, 납입연수 공제는 근속연수 공제와 동일

○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주택 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 특례

Max (①,②)

-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② 주택 등 매매차익×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 매매차익)×표준세율

[참 고]

구분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4년~'15년 양도	'16년 이후 양도	
	표준세율	표준세율 + 1%	·1년~2년 보유 : 4% ·1년 미만 보유 : 5%
미등기양도자산	7%		

○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법 §69①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소칙 별지 제16호 서식]
- ▶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 퇴직소득 〈분류과세〉

-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15년 이전 퇴직 : '12년 이전과 '13년 이후로 안분하여 계산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소득공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제외, (퇴직소득총액-비과세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 + 근속연수공제

- ▶ '16년 이후 퇴직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근속연수공제}^*) \div \text{근속연수} \times 12\} - \text{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별공제 [소법§48]

- 산출세액 계산특례 [지법 부칙 §9]

퇴직일	퇴직소득 산출세액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 8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
2017년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 6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

2018년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 4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
2019년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 2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

《 계산 사례 》

- ▶ 입사일 2002.1.1. 퇴사일 2016.1.10. 근속연수 15년, 퇴직소득 540,000,000원
 ※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
 ▶ 근속연수공제 : 11년~20년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년)
 ▶ 환산급여별공제 : 3억원 초과 ➡ 환산급여 × 35% + 4,670만원



▶ 종전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구분	'12.12.31.이전 (11년)	'13.1.1.이후 (4년)
퇴직소득	540,000,000	540,000,000
(-)정률공제(40%)	216,000,000	216,000,000
(-)근속연수공제	8,000,000	8,000,000
과세표준	316,000,000 (540-216-8)	316,000,000 (540-216-8)
과세표준 안분	231,733,333 (316,000,000×11/15)	84,266,667 (316,000,000×4/15)
연평균 과세표준	21,066,667 (231,733,333÷11)	21,066,667 (84,266,667÷4)
연분연승 연평균 환산과표 ('13이후 5배, '16이후 12배)	21,066,667	105,333,333 (21,066,667 × 5)
연분연승 연평균 산출세액 (환산과표 × 세율)	208,000 (72,000+9,066,667 × 1.5%)	2,196,667 (1,590,000+17,333,333×3.5%)
연평균 산출세액 (연분연승 재환산)	208,000	439,933 (2,196,667 ÷ 5)
근속연수별 산출세액	2,288,000 (208,000 × 11)	1,757,333 (439,933 × 4)
[종전 규정] 산출세액 합계		4,045,333



▶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구분	'16.1.1. 이후	계산식
퇴직소득	540,000,000	
(-)근속연수공제	8,000,000	
환산 급여	425,600,000	(퇴직소득-근속공제) ÷ 근속연수 × 12배
환산 급여별 공제	195,666,000	환산급여 × 35% + 4,670만원
과세표준	229,940,000	환산급여 - 환산급여별공제
환산 산출세액	6,797,720	과세표준 × 세율
재환산 산출세액	8,497,150	환산산출세액 ÷ 12배 × 근속연수
[개정 규정] 산출세액		8,497,150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2016

구 분	세액	계산식
(종전 규정) 산출세액 비율	3,236,266	$4,045,333 \times 80\%$
(개정 규정) 산출세액 비율	1,699,430	$8,497,150 \times 20\%$
신고대상세액	4,935,696	$3,236,266 + 1,699,430$

○ 과세방법

- ▶ (원칙) 특별징수 : 퇴직소득 지급시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 (특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하지 않음, 기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신청 가능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인출시 연금소득, 연금외형태로 인출시는 퇴직소득(퇴직금) 또는 기타소득(운용수익, 자가불입금)으로 과세 ➡ 연금외수령 이전까지는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특별징수도 하지 않음

- ▶ 확정신고 : 확정신고가 원칙. 단, 원천징수된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음.
(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

⑧ 세율 [지법§92]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1억 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76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17.1.1. 이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내 가감 가능

[참 고]

▶ 국세와의 법령개정 시점 차이로 '14년 일부기간 국세와 지방세 세율 차이 발생

과세표준 구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14.1.1~3.23)		('14.3/24 ~)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0.6%	-	6%	-

4,600만원 이하	1.5%	10만8천원	1.5%	10만8천원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만2천원	2.4%	52만2천원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만원	3.5%	149만원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만원	3.8%	194만원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3.8%	239만원				

구분	내 용	'14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개정 전 ~3/23	개정 후 3/24~	개정 후 ~3/23 적용	
국내 자산 (토지, 건물, 부동 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부동산, 부동산 권리 (§103조의3①1호)	세율㉑	세율㉒	세율㉑	세율㉒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자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103조의3①2호)	4%	4%	4%	4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03조의3①2호)	4%	세율㉒*	세율㉒	세율㉒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 권 제외) (§103조의3①3호)	5%	5%	5%	50%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03조의3①3호)	5%	4%	4%	40%
	※ 다주택자 관련 부분 (§103조의3①4호~7호)	5~6% (‘14년은 세율㉑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삭제 (세율㉒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세율㉑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삭제 (세율㉒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비사업용 토지 (§103조의3①8호)	6% (‘14년은 세율㉑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세율㉒ + 1%P, (‘14년은 세율㉒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세율㉑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세율㉒ + 10%P, (‘14년은 세율㉒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미등기양도 (§103조의3①10호)	7%	7%	7%	70%
	1세대3주택 이상 주택(부수토지포함) (§103조의3⑤1호)	규정 없음	세율㉒ + 1%P,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경우 MAX (세율㉒ + 1%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해당 없음	세율㉒ + 10%P,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경우 MAX (세율㉒ + 10%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 주택 (§103조의3⑤2호)				
	비사업용 토지 (§103조의3⑤3호)				
	그 밖에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103조의3⑤4호)				
투기 지정 지역	1세대3주택 이상 주택(부수토지포함) (§103조의3⑤1호)	규정 없음	세율㉒ + 1%P,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경우 MAX (세율㉒ + 1%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해당 없음	세율㉒ + 10%P,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경우 MAX (세율㉒ + 10%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 주택 (§103조의3⑤2호)				
	비사업용 토지 (§103조의3⑤3호)				
	그 밖에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103조의3⑤4호)				

구분	내 용	'14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개정 전 ~3/23	개정 후 3/24~	개정 후 ~3/23 적용	
국내 자산 (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3조의3①11호나목)	1%	1%	1%	10%
	그 밖의 주식(일반) (§103조의3①11호다목)	2%	2%	2%	20%
	중소기업의 법인의 주식 등(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103조의3①11호가목)	3%	3%	3%	30%
국내 자산 (기타)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A,B (§103조의3①1호)	세율㉠	세율㉡	세율㉠	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103조의3①9호)	6% (‘14년은 세율㉠)	세율㉡ + 1%P, (‘14년은 세율㉡)	세율㉠	세율㉡ + 10%P, (‘14년은 세율㉡)
국외 자산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3조의3③1호)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103조의3③2호)	1%	1%	1%	10%
	중소기업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103조의3③2호)	2%	2%	2%	20%
	기타자산 (§103조의3③1호)	세율㉠	세율㉡	세율㉠	세율㉡

【 Check 】

- ▶ ‘14.1.1~3.23 기간 중 양도분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의 차이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하여 과세표준 1.5억원 초과시 세부담 차이 발생(지방세 < 국세의 10%)
- ▶ ‘14.1.1~3.23 기간 중 누진세율 적용자산(세율㉠)과 그 외 자산(세율㉡, 소급 누진세율 적용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지방§103조의6②를 적용하는 경우 세율㉠ 적용
(예) 세율㉠ 적용자산을 양도하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주택을 양도(4%)세율㉡로 개정)함으로 인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율㉠로 적용
※ 양도순서에 따른 세부담 차이 발생 방지

9 세액 공제·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지특법 §93~§176)에서 규정
- 국세 공제·감면의 10% 수준 별도 규정함

□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조항

구분	국세	지특법	비고
배당 세액공제	소법 §56	§95	
기장 세액공제	소법 §56조의2	§93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소법 §57	§97	
재해손실 세액공제	소법 §58	§96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법 §59	§94	
자녀 세액공제	소법 §59조의2	§97조의2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법 §59조의3	§97조의3	
특별 세액공제	소법 §59조의4	§97조의4	
급여 등 세액감면	소법 §59조의5	§98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시 적용순위 등	소법 §60	§176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법 §90	§16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5	§99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조특법 §6	§100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조특법 §7	§1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10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11	§103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	§10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 감면	조특법 §12조의2	§10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	조특법 §18	§106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특법 §18조의2	§106조의2	
공공차관 도입 과세특례	조특법 §20	§107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면제	조특법 §21	§108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조특법 §24	§109	
안전설비 투자 등 세액공제	조특법 §25	§11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조의2	§111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조의3	§112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조의4	§113	

구분	국세	지특법	비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6	§11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29조의2	§115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 감면	조특법 §30	§11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30조의2	§11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30조의4	§118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	조특법 §31	§119	
법인전환 이월과세	조특법 §32	§120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33	§121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33조의2	§122	
주주 등 자산양도 과세특례	조특법 §40	§1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63	§12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조특법 §64	§125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면제	조특법 §66	§126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면제	조특법 §67	§127	
농업인 등 면제	조특법 §68	§128	
자경농지 감면	조특법 §69	§129	
축사용지 감면	조특법 §69조의2	§130	
농지대토 감면	조특법 §70	§131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 과세특례	조특법 §70조의2	§131조의2	
정치자금 세액공제	조특법 §76	§164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조특법 §77	§13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 감면	조특법 §77조의3	§133	
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 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 세액감면	조특법 §85조의2	§13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조특법 §85조의6	§135	
국가 양도 산지감면	조특법 §85조의10	§136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94	§13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조특법 §96	§138	
장기임대주택 감면	조특법 §97	§139	

구분	국세	지특법	비고
신축임대주택 면제	조특법 §97조의2	§140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	§141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2	§142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3	§143	
비거주자의 주택취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4	§144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5	§145	
준공후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6	§146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7	§147	
신축주택 등 과세특례	조특법 §99조의2	§148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조특법 §102	§149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조특법§104조의14	§15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특법§104조의18	§15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104조의24	§15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조특법§104조의25	§165	
외국인투자 감면	조특법§121조의2	§15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조특법§121조의8	§154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	조특법§121조의9	§155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	조특법§121조의17	§156	

10 신고·납부

☐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와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

○ 단, 납세지오류로 인한 수정신고의 경우 부과지를 받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 납세지오류인 경우 부과지 전 수정신고·경정청구시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없음

11 가산세

☐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 가산세 [지법 §99]

○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

○ 기장불성실·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소법 §81⑧,⑨)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지기법 §53

조의2, 53조의3)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비고
①무기장	▶MAX(산출세액×20%, 수입금액×0.07%)	
①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 × 2%	3개월 내 제출 1%
②계산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 × 1%	1개월 내 제출 0.5%
	▶미발급·가공발급·허위수수분 공급가액 × 2%	
③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미수취·허위수취 금액 × 2%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 금액 추계자 제외)
④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 × 1%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 금액 추계자 제외)
⑤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무(과소)신고수입금액× 0.5%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 한함)
⑥공동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미등록·허위등록 : 총수입금액 × 0.5%	
	▶손익분비비율허위신고 등 : 총수입금액 × 0.1%	
⑦무기장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2%	
⑧사업용계좌미사용	▶미사용금액 × 0.2%	
	▶미신고 MAX(미신고간수입금액×2%, 미사용금액×2%)	
⑨신용카드거래 거부	▶건별 MAX (거부·불분명 금액×5%, 5,000원)	
⑩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건별 MAX (거부·불분명 금액×5%, 5,000원)	
⑪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영수증 사실과 다르게 발급금액 × 2%	
	▶기부자별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금액 × 0.2%	
⑫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미제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⑬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 0.5%	

【 Check 】

- ▶ 지방세는 의무위반별 가산세 한도 규정 없음. 단, 현재는 국세 가산세의 10%로 개정되어 가산세 한도 적용된 금액임.
- ▶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 - (국세) 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지방세) 1개월 내 50%, 6개월 내 규정 없음

12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감면공제액 결정세액 가 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	--

- 「소득세법」 상 예정신고 (소법 §105 및 118조의8)

구분	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파생상품	(예정신고하지 않음)

※ 국외자산 중 주식 등에 대해 예정신고·납부 규정 폐지(2012.1.1. 양도분부터)

▶ 예정신고 산출세액

$$\text{예정신고산출세액} = (\text{양도차익} - \text{장기보유특별공제} - \text{양도소득기본공제}) \times \text{세율}$$

▶ 예정신고 산출세액 (2회이상 양도)

$$\text{예정신고산출세액} = (\text{이미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text{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무신고 가산세 계산 》

- ▶ 예정무신고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가산세 부과
- ▶ 확정무신고가산세는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

$$\text{확정무신고가산세} = (\text{②} - \text{①}) \times 20\% (40\%)$$

(①예정(무)신고분 산출세액 합계, ②소득금액 합산분 산출세액)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 자산 1건 양도한 경우 :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이상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자)
 - ①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가산세 부과한 후
 - ②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해 확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 예정신고 하였으나 확정(소득금액 합산) 무신고한 경우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산출세액에 확정무신고가산세 부과

▶ 예정무신고 하였으나 확정신고한 경우

-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확정신고시 예정무신고가산세 신고여부 반드시 확인)

▶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 양도 후 예정무신고한 경우

- 확정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은 위의 자산 1건 양도한 경우와 동일 취지

※ 행자부 운영실무에서 발췌

○ 양도자산별 세율

구분		과세대상	국내자산	국외자산									
일반지역	부동산	토지, 건물	<u>0.6~3.8% 누진세율</u> · 단기보유 <table><tr><td></td><td>1년미만</td><td>2년미만</td></tr><tr><td>주택</td><td>4%</td><td>누진</td></tr><tr><td>일반</td><td>5%</td><td>4%</td></tr></table>		1년미만	2년미만	주택	4%	누진	일반	5%	4%	<u>0.6~3.8% 누진세율</u> (보유기간 무관)
		1년미만		2년미만									
	주택	4%	누진										
	일반	5%	4%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미등기자산 7% · 비사업용토지 : 누진 + 1% ('14~'15는 누진)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u>0.6~3.8% 누진세율</u>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중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 법인 주식 : 누진 + 1% ('14~'15는 누진)											
주식 등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등 비상장법인 주식등	<u>2% 단일세율</u> · 중소기업 주식 : 1% · 중소기업외, 대주주 : 3%											
파생상품	KOSPI200선물옵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	<u>1% 단일세율</u> · '16.1.1. 거래부터											
지정지역	지정지역 부동산	1세대3주택 1세대3주택(조합입주권포함) 비사업용토지	Max (누진 + 1%, 단기보유)										
	가격금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확정신고 대상) 예정신고시 확정신고 의무 없으나 아래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함

- ▶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개인지방소득(양도소득) 가산세 [지법§103조의8]

-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
- 기장불성실 가산세(소법 §115)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지기법 §53조의2, 53조의3)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소득세법」 제115조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① 기장불성실	산출세액 × 미기장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7/10,000)

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 소득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금액)
- 세율 :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의 10%
-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 납부
 - 계산서와 명세서[별지 제42호의2 서식] 제출. 단,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 (과세권자 요구시는 제출)
- 과오납
 - (원칙)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
 - (환급) 1.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2.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
※ 이종환급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소득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환급 신청

〈 연금소득 등 납세지 오류 〉

- ▶ 복권당첨금 및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연금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납세지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 납부할 세액에서 가감
※ 납세지 오류의 경우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미적용

○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기법 §53조의5]

- (~'12년) 과소·무납부세액 × 10% (舊 지법 §96)
- ('13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무납부세액 × 5%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16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무납부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유권해석 사례 〉

- ▶ 과세기간 중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세정13407-201, 1995.3.23.】
(요약) 원천징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지 판단
- ▶ 과세기간 중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 【지방세운영과-1914, 2010.5.7.】
(요약) 연말정산일(12.31.) 현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서 환급

VIII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해석사례 요약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안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법제체14-0217, 2014.07.07】

【 안분오류로 인한 수정신고시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유무 】

법인이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과세관청이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환급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과세관청 부과시는 가산세 대상

【지방세운영과-846, 2014.03.10】

【 안분시 수익 발생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

“사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청구법인 직원을 발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 중 체육시설 부분은 시설관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소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지0729, 2014.02.06】

【 직접 사용 판단 】

이 건 아파트가 2011.11.30. 준공된 점, 이 건 아파트 준공 후 쟁점건축물의 전력사용량 및 상수도사용량이 급감한 점, 2011.11.13.이후부터 승강기 운행이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쟁점건축물 중 모텔하우스 및 분양사무실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안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지0366, 2013.11.21】

【 사업장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 878 판결 참조)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

【지방세운영과-593, 2013.02.27】

【 직접 사용 판단 】

주목적인 숙박업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매입·매출 등 거래사실도 없으며 건물 경비 목적으로 종업원 2명이 건물 관리만을 하고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안분대상에서 제외

【지방세운영과-4081, 2012.12.18】

【 공사장에 설치된 사업장 】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사업장이 각 지방의 공사현장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장별 소재지의 관할 시, 군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함

【시군세과-399, 2008.04.21】

【 10% 이상인 경우 귀속년도별로 안분 】

법인세 경정고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초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귀속년도에 관계없이 추정금과 환부금을 가감조정하여 최종세액을 법인세 납세지에 납부할 것이 아니라, 귀속년도별로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주의) 2014 귀속부터 10% 미만 특례 폐지

【시군세과-197, 2008.04.02】

【 건설법인의 미분양 부동산 안분 여부 】

건설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분양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안분대상이 아님

【지방세정팀-2114, 2006.05.25】

【 전대한 사업장의 안분 여부 】

쇼핑몰에서 임차한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였고, 동점포에서 제3자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대한 점포는 제3자의 사업장에 해당함

【지방세정팀-307, 2005.04.20】

【 내향선박 선원의 인적설비 귀속 】

법인세할 안분대상 인적설비의 사업장 귀속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이 실제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곳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내향선박의 경우 선박과 선원관리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선적항을 당해 선원의 근무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선적항에 선박등록을 하였을 뿐 사실상 선적항 이외의 곳에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선박을 사실상 관리하는 곳을 선원의 근무지로 보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정팀-309, 2005.04.20】

【 경정시 사업연도별 안분 】

경정된 사업연도의 사업장이 현재와 다를 경우 경정된 각 사업연도의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야 함

【세정과-918, 2004.04.23】

【 공실인 경우 사업장 여부 】

벽돌공장 내부가 공실로 관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음

【세정13407-98, 2003.02.05】

【 비영리법인 안분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분함 】

「법인세법」 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세정13430-385, 2002.04.23】

【 저장시설 및 기계장치 판단 】

사업소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소정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함

【대법원 2000두1744, 2001.12.24】

【 공동도급공사수행으로 사업장 면적 산정이 불가한 경우 】

공동도급공사수행으로 현장사무소 등 업체별 건축물의 실제사용면적 산정이 불가한 경우라면 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비례하여 주민세를 배분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해 볼 때 각 참여업체별 지분율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세정13430-1115, 2000.09.18】

【 임대 및 공실인 경우 안분 제외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공실인 경우 안분대상에서 제외함

【세정13407-8, 1999.10.12】

【 10% 초과시 해당 사업연도 안분율로 안분 】

94년도와 95년도분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추가납부 세액이 10%에 미달되어 98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시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추가납부 세액이 10%를 초과한 96년도분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96년도 안분율에 의하여 신고납부 해야 함

※ (주의) 2014 귀속부터 10% 미만 특례 폐지

【세정13407-아1098, 1998.12.08】

【 창고의 안분 여부 】

인적설비와 물적설비 중 한쪽만 갖추어도 안분대상이 되는 바, 창고를 사용계약 체결하여 제품보관·입출고등 창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분대상임

【세정13407-아839, 1998.11.07】

【 파견 직원의 사업장 인적설비 판단 】

신공항건설관리공단에 인력을 파견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무용가구를 이용하여 공단 직원과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공단 소재지에 납부하여야 함

【세정13407-1449, 1997.11.18】

【 법령 적용 및 귀속사업연도 말 기준 안분 】

귀속연도 해당 법령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고지 당시의 법에 따라 각 귀속사업연도 말 현재의 종업원수 및 건축물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 독립세 전환 전 사례임에 유의

【세정13407-837, 1995.08.30.】

【 파견 직원의 사업장 인적설비 판단 】

별도의 물적설비가 없는 장소에 경비용역 인원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법인균등할의 과세대상은 되지 않으나, 법인세할 안분대상은 됨

【세정13407-692, 1995.07.19】

【 사업장 건축물 면적 판단 】

공장 구외의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장 구내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됨

【세정13407-320, 1994.07.08.】

【 인적설비 및 공장구내 기숙사 등 】

일용직, 직업훈련생, 휴직중인 상시고용자 등은 급여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행위로 인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포함되며, 공장구내의 기숙사, 별도설치된 변전시설, 폐수 처리시설 등은 해당 사업에 제공되는 일체의 건축물에 포함됨

【시세13407-72, 1994.03.28.】

【 임대시 안분여부 및 관리사무실 안분여부 】

소유건축물 전체를 임대만하고 있을뿐 귀사의 관리사무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안분대상이 아님, 단, 그 건물에 귀사의 관리사무실 등이 있다면 종업원이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실 연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시세13407-59, 1994.03.11.】

IX 지방소득세 운영 지침

결손금 소급공제 운영 지침

(지방세정책과-1850, 2015.5.12.)

□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의 개념(지방세법 §103조의28)

-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 가능
 - ※ 일반법인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공제만 가능(10년)

□ 적용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①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③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
 - '13년 이전 소득의 경우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구 지방세법 §91 ⑤)

□ 납세자 환급신청 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소급공제 받고자 하는 결손금을 기재하여 현년도('14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됨
-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방법 : MIN(①, ②)

※'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 환급세액 계산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times 1/10$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times$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세율 $\times 1/10$)]
- ②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times 1/10$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times 1/10$

※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계산 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times$ 직전사업연도 세율]
- ②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 지자체 환급처리 방법

- 현년도('14년)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전 사업연도('13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 통보
 - 전산 처리 방법은 <붙임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결손금 소급공제 기능 개선 내역 참조
 - ※ <붙임3>에 통보된 **미전송 자치단체의 경우 5.12.까지 반드시 과세자료 전송**
- 직전 사업연도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서는 환급신청세액 $\times$ 직전사업연도 안분율 적용하여 전년도 과세자료를 감액 및 환급 업무 처리
 - ※ 5.15.까지 표준시스템 통해 전년도 대상 자치단체에 소급공제 환급신청 내용 통보예정
- 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한 날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 (지기법 §77조 ⑤)

□ 환급세액의 추정

구분		내 용
소급공제대상 결손금액 변경	감소	환급세액의 추정(이자상당액 가산)
	증가	경정청구 가능(당초 환급신청을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변경	감소	환급세액의 결정(징수, 이자상당액 가산)
	증가	환급세액 재결정(추가환급 가능)

○ 추징세액

$$\text{환급취소세액} = \text{당초 환급세액} \times \frac{\text{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한 금액}}{\text{소급공제 결손금액}}$$

○ 이자상당액

$$\text{이자상당액} = \text{환급취소세액} \times \text{기간(일수)} \times 3/10,000$$

참고

주요 유권해석 사례

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분 수정신고납부된 법인세 포함 여부

-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960 (1999.5.26.)

②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 (요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46012-1644 (2000.7.26.)

③ 결손금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 (요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

은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 징세과-481 (2013.4.5.)

4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손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소급공제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입니다. ▶ 징세46101-1176 (1998.5.13.)

5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 여부

-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314 (2000.6.7.)

6 해산등기와 함께 폐업한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도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2006.12.15.)

7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업중인 법인의 환급 가능 여부

- (요지) 사업을 장기간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법인46012-633(1998.3.14.)

⑧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 (요지)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법인46012-1255(1998.5.1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추진

(세무과-1832, 2016.1.26.)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및 일괄환급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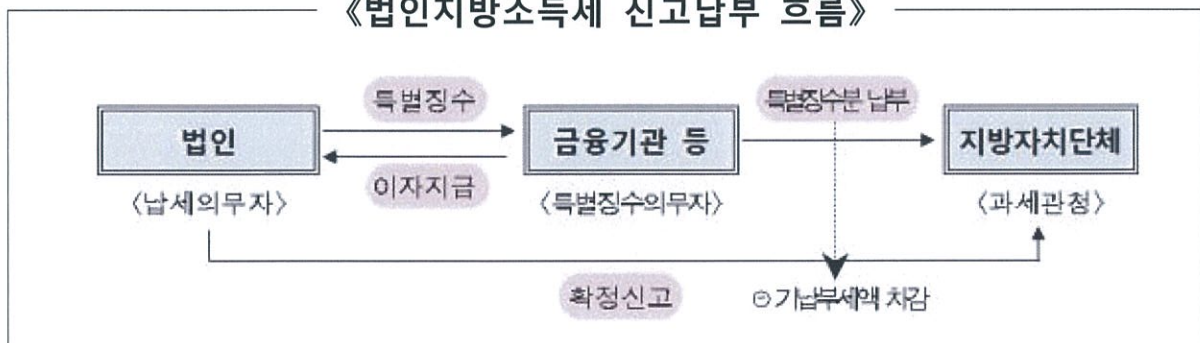
- '15년 시행된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 특별징수세액 본점 일괄 환급 및 지자체간 정산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15년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제도 시행

- 금융기관에서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대신 징수하여 매월 납부
- 법인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다음 해 4월) 특별징수로 선납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그 차액을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흐름》



□ 납세지(특별징수 ≠ 확정신고)가 다를 경우 납세자 불편 발생

-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불가, 선납한 특별징수세액은 특별징수 납세지별 각각 환급 신청

- ▶ 특별징수 납세지 : 소득의 지급지 (계좌 개설지)
- ▶ 확정신고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 법인지방소득세의 최종 귀속은 사업장 소재 지자체임

2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 개요

☐ 근거 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62, '16.1.1. 시행)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 납세지(특별징수 ≠ 확정신고)가 다를 경우 확정신고지 지방소득세로 간주
-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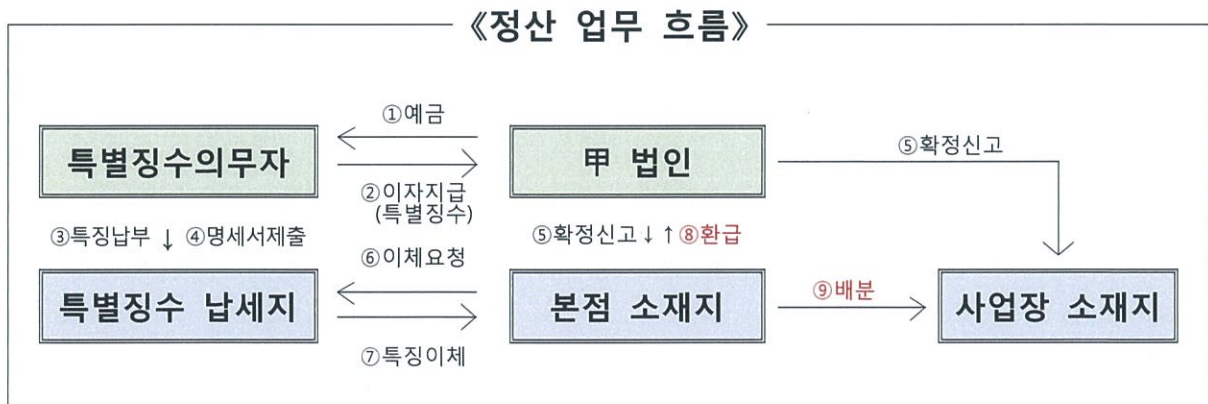
☐ 지자체간 정산방법

☐ 지방자치단체 본점 소재지

- 특별징수 납세지 지자체로부터 특별징수세액을 이체받아
- 본점 외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로 안분하여 배분(또는 본점 일괄 환급)

☐ 납세의무자 법인

- 특별징수지 구분없이 확정신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 정산 협약서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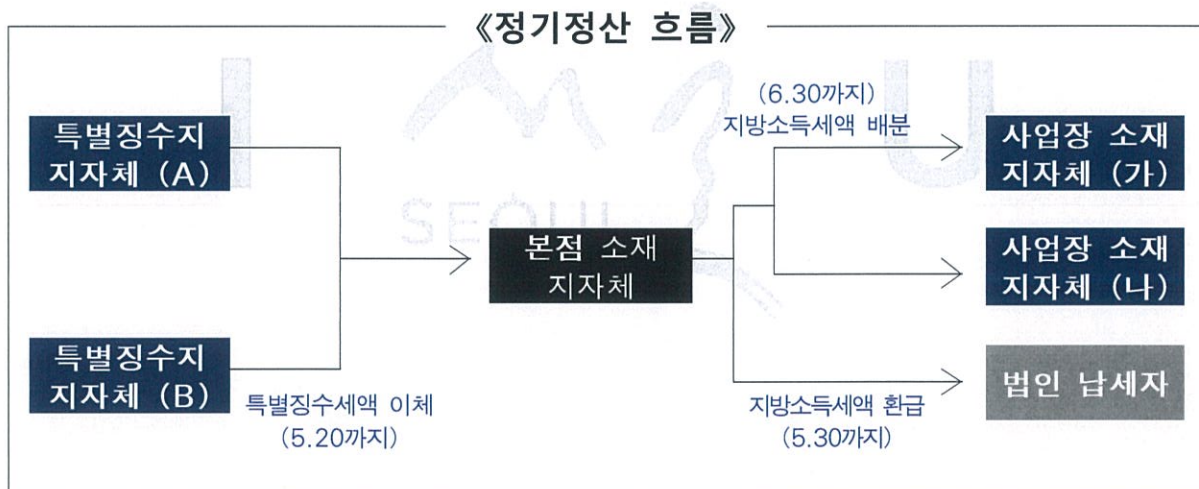
1 목적

- 전국 지자체간 상호 협력하여 협약기관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상호 정산과 신고자료 공유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2 정산 시기

- 정기 정산 : 사업연도 종료일이 12.31.인 법인에 대한 지자체간 정산

- ▶ 5.15. 본점소재지 ➡ 특별징수지 : 특별징수세액 이체 요청
- ▶ 5.20. 특별징수지 ➡ 본점소재지 : 특별징수세액 이체
- ▶ 5.30. 본점소재지 ➡ 법인 : 본점 일괄 환급 (산출세액 < 특별징수세액)
- ▶ 6.30. 본점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기납부세액 배분



- 수시 정산 : 정기 정산 외 법인을 대상으로 매월 지자체간 정산

- ▶ 사업연도 종료일이 12.31.이 아닌 법인
- ▶ 기한 후 신고 법인
- ▶ 특별징수명세서(금융기관 제출분)와 특별징수세액명세서(법인 제출분)의 금액이 1백만원 초과 차이나는 법인 등

3 기타 사항

- 정산 제외 : 전체 특별징수세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정산 제외

- 환급 가산금 : 환급가산금 발생시 사업장 소재 지자체 안분 부담
- 협약의 효력기간 : 2016.1.1. ~ 2016.12.31
- ▶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협약, 미체결시 기존 협약 유지

3 추진 계획

☐ 업무협약 체결

- 자치구로부터 업무협약체결 권한 수임 : '16.1.29.(금)까지
- 시·도간 업무 협약 체결 : '16.2.26.(금)까지
- ※ **특·광역시** 시세 (자치구 위임징수), **도(道)** 시·군세

☐ 전산시스템 개발

-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특별징수명세서 등록 기능 개발 : '16.2.29.(월)까지
- 지방자치단체간 정산을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개발 : '16.3.31.(목)까지
- 일괄 수납 처리를 위한 시금고 수납처리 시스템 개발 : '16.3.31.(목)까지

☐ 지자체간 정산 업무 수행



X 과세체계 개편 전 · 후 비교 요약

구분			개편 전 (부가세 방식)	개편 후 (독립세 방식)	비고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	동일	
납세지	개 인		소득세 신고일 현재 주소지	소득세 신고일 현재 주소지	동일	
	법 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안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안분		
	특별징수		지급받는 자 근무지 등	지급받는 자 근무지 등		
비과세			반영된 과세표준 적용	국세 준용	동일	
과세표준	개인	종합소득	소득세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준용	결정세액 →과세표준 준용 (단, 특징 동일)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준용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세액		
	법인	신 고	법인세액	법인세 과세표준		
특별징수		원천징수 법인세액				
세율	개인	종합소득	10%(부가세율)	독립세율 0.6 ~ 3.8%	부가세율→ 별도세율 (단, 특징 동일)	
		양도소득		독립세율 0.6 ~ 7%		
		특별징수		10%(부가세율)		
	법인	신 고	10%(부가세율)	독립세율 1.0~2.2%		
특별징수		10%(부가세율)				
감면	개인		반영된 과세표준 적용	지특법 별도 규정 국세 감면의 10%수준	신설	
	법인			지특법 별도 규정 없음 (단, 조합법인 세율특례)	규정 없음	
징수방법	신고 납부	개인	세무서 신고, 지자체 납부	지자체 신고·납부 (2016년 말까지 좌동)	지자체 일원화	
		법인	지자체 신고·납부	지자체 신고·납부	동일	
	결정 결정	개인	세무서 처리	지자체 처리 (2016년 말까지 좌동)	지자체 일원화	
		법인	지자체 처리	지자체 처리	동일	
	특별징수	개인		지자체 납부	동일	
		법 인	내국	없음	지자체 납부 (2015.1월부터 시행)	신설
			외국	지자체 납부	지자체 납부	동일

Ⅺ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관련 서식은 이택스[etax.seoul.go.kr] 홈페이지, 시·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식 목록

[서식 40]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82	[서식 43의9] 소금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114
[서식 41]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83	[서식 43의10]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116
[서식 4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85	[서식 4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18
[서식 42의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87	[서식 44의2]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0
[서식 42의3] 징수교부금 청구서	89	[서식 44의3]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122
[서식 42의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영수증)	91	[서식 44의4]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124
[서식 4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92	[서식 44의5]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6
[서식 43의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94	[서식 44의6] 안분명세서	128
[서식 43의3]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96	[서식 4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30
[서식 43의4]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98~99	[서식 45]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132
[서식 43의5] (갑)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100	[서식 45의2]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134
[서식 43의5] (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102	[서식 45의3]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135
[서식 43의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104	[서식 45의4] 외국법인 증여소득 신고서	136
[서식 43의6]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106	[서식 45의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137
[서식 43의7] (갑)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일반법인용)	108	[서식 45의6]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38
[서식 43의7] (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연결법인용)	111	[기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내용 통보 외	139
[서식 43의8] (전산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113		

2016년 지방소득세 실무

본 책자는 2016년 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의 오류나 개선의견을 in10@seoul.go.kr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발행일자 : 2016년 3월 24일

발행처 : 서울특별시 재무국

집필·편집 : 재무국장 조옥형

세무과장 김윤규

소득소비세팀장 류대창

세무과 안영산

세무과 이주열

세무과 전인열

〈비매품〉